

2021년도 제2차 질병관리청 및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보건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4월 26일
질 병 관 리 청 장

1. 채용예정인원 : 총 59명

- (질병관리청) 총 52명 채용 (7급 6명, 9급 46명)

채용분야	임용예정		선발예정 인원	담당예정직무	근무예정 기관
	직급	직류			
질병관리 (보건)	보건7급	보건	3명	보건행정분야 지침 마련·집행 및 계획· 예산 관리 등 질병관리 업무	질병관리청 (청주)
질병관리 (방역)	보건7급	방역	3명	방역행정분야 지침 마련·집행 및 계획· 예산 관리 등 질병관리 업무	질병대응센터 (전국)
검역행정 (보건)	보건9급	보건	22명	운송수단 검역, 검역감염병 관리 및 검역구역 방역 등 검역행정 업무	국립검역소 (전국)
검역행정 (방역)	보건9급	방역	22명		
검역행정 (장애구분)	보건9급	보건	2명		

- (보건복지부) 총 7명 채용 (7급 7명)

채용분야	임용예정		선발예정 인원	담당예정직무	근무예정 기관
	직급	직류			
보건의료 (보건)	보건7급	보건	7명	보건의료분야 정책·법령 마련·집행 및 계획·예산 관리 등 보건의료정책 업무	보건복지부 (세종)

※ 중복지원 불가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04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046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01호)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5호)

3.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21. 6. 26.예정)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건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아래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가. 7급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

나. 9급 :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기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의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지원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나. 응시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직급별 요건 : 응시 직급별로 아래 표의 요건(1~2.) 중 하나는 충족해야 하며, 두 직급 모두 충족하더라도 1개만 선택해서 지원해야 함

7급	9급
1. 대학교 이상의 모집전공분야 해당학과 졸업자* *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는 등 해당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1. 고등학교 이상의 모집전공분야 해당학과(교) 졸업자
2. 모집전공분야 해당 석사학위 소지자	2. 모집전공분야 해당 석사학위 소지자

- **직류별 모집전공분야 요건** : 응시 직류별로 구분된 아래 표의 모집전공분야에 해당되어야 하며, 복수의 모집전공분야에 해당하더라도 1개만 선택해서 지원해야 함

응시 직류	모집 전공분야	해당학과(전공분야)
보건	석사학위	보건(의료)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질병관리학
	보건행정	○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학과를 보건행정 모집전공분야의 학과로 인정하되, 응시자 또한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해당됨 - 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병원행정학(병원경영학, 병원관리학), 보건(의료)관계법규, 건강(의료)보험,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임상병리	임상병리(학)과
	약 학	약학과, 제약학과
	간 호 학	간호(학)과
	한 약 학	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 * 7급 응시는 졸업자 중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에 한함
방역	석사학위	보건(의료)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질병관리학, 감염학, 미생물학
	방역행정	○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학과를 방역행정 모집전공분야의 학과로 인정하되, 응시자 또한 아래 열거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해당됨 - 공중보건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보건(의료)통계학, 보건(의료)정보학, 보건(의료)전산학, 의학용어, 기초의학, 생리학(해부생리학), 병리학, 생물(미생물)학, (실험)동물학, (보건)역학, 위생학, 감염(관리)학
	임상병리	임상병리(학)과
	약 학	약학과, 제약학과
	간 호 학	간호(학)과
	수 의 학	수의학과
	생 물 학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응시직류 및 채용직급별로 구분(과목당 25문항 객관식)

응시직류	채용직급	필기시험과목
보건	7급	영어, 행정법,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보건의료관계법규*
	9급	영어, 행정법총론, 공중보건학, 보건의료관계법규*
방역	7급	영어, 역학,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감염의료관계법규**
	9급	영어, 생물학(식물분야 제외), 공중보건학, 감염의료관계법규**

* 보건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약사법

** 감염의료관계법규(6개) :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 필기시험 가산특전(세부 내용은 “7.필기시험 가산특전” 참고)

- 보건의료관련 자격(면허)증 소지자 가산점 가산(5%이내, 직류별 구분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가산점 가산(10%이내)
-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 가산(5%이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자(3급 이상) 가산점 가산(2%이내)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4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1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까지 결정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합격을 상한제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상자 등의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선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면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시험 일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아래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필기시험 장소 등 공고 : '21. 05. 21. (금)
- 필기시험 : '21. 05. 29. (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장소 등 공고 : '21. 06. 17. (목)
 -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면접시험 : '21. 06. 26. (토)
- 최종합격자 발표 : '21. 07. 14.(수)
 -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신규자 교육 등 근무 시작 예정시기 : '21. 08월 초
 - ※ 필기시험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 임용시행령」 제30조제4항)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1. 5. 3. (월) ~ 5. 6. (목)
- 접수방법 : 응시분야에 따라 아래 주소 참고하여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표를 부착한 응시표 회신용 봉투 별도 동봉 필요)

채용분야	주 소
질병관리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생명과학단지 질병관리청 1동 운영지원과 보건직 채용 담당자 앞
검역행정	
보건의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인사과 보건직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21.05.06.) 소인분까지 유효함
 -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채용 분야 및 직급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소인분까지 유효함은 원서접수 마감일 날짜가 찍힌 우편으로 접수된 것을 말함. 방문접수,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안에 등기우표를 부착한 응시표 회신용 봉투(응시원서 하단 응시표 크기 이상인 봉투면 가능)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 * 응시표 회신용 봉투에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반드시 기재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또는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연락가능한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형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다. 졸업자 추천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본 시험은 교육감(고등학교 졸업자만 해당) 또는 학교(과)장(전문대학·대학(원) 졸업자만 해당)의 졸업자 추천을 통해서만 응시 가능한 유형의 시험입니다.

- 본 시험에 응시하는 전문대학·대학(원)학과의 학교(과)장은 응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과)장 직인이 날인된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작성하고,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 및 방역행정 모집전공분야는 학과의 개설과목 목록*을 추천명부 뒤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보건행정·방역행정 모집분야 관련 과목 중 5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운영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응시자가 재학했던 기간 중 응시조건을 충족하는 연도의 개설과목을 제출(예: 응시자 입학/졸업 연도 기준 전공교과목)
- 추천명부가 없는 경우의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
- ※ 고등학교 졸업자 추천은 별도 공문을 통해 각 지역 교육감에게 요청하므로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응시자는 “라. 제출 서류” 중 응시자 추천명부 제출 불필요

□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전원제출)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자필로 작성(별지서식 제1호) ○ 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전자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첨부 권장)를 응시원서 뒷장으로 첨부 * 전자정부수입인지 발급시 성명이 필요한 경우 응시자 성명 기입
2. 졸업증명서(학위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전원제출)	○ 모집전공분야 해당 학위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제출 ※ 증명서에 전공분야가 표시되어야 함
3. 응시자 추천명부 원본 1부 (전원제출)	○ 상기 “다. 졸업자 추천 방법” 을 참고하여 제출(별지서식 제2호) ※ 추천명부가 없을 경우 접수 불가
4. 모집전공분야 학과 개설과목 목록 1부 (해당자에 한함)	○ 보건행정 또는 방역행정 모집전공분야로 응시하는 경우만 제출 - 응시자가 재학했던 기간 중 응시조건을 충족하는 연도의 개설 과목 제출(예: 응시자 입학/졸업 연도 기준 전공교과목)
5. 모집전공분야 학과 성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보건행정, 방역행정 또는 생물학 모집전공분야로 응시하는 경우만 제출
6.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원본 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 가산특전 해당자만 해당되는 증빙서류 사본 제출 - 해당 자격(면허)증(직류별로 해당 자격(면허)증 상이) 사본 또는 증명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증명서, 의사상자 등의 해당 증명서 등 ※ 직무분야 자격(면허)증의 경우 합격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7.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남성만 제출,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전원제출)	○ 자필 서명 후 제출(별지서식 제3호)
9. 응시표 회신용 봉투(등기우표 포함) 1부 (전원제출)	○ 등기우표를 부착한 응시표 회신용 빈 봉투(받는 사람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기재) 별도 동봉

* 면접시험 대상자 제출서류(자기소개서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함께 공고 예정

** 정부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비(전자수입인지는 인터넷 발급 가능)

7. 필기시험 가산특전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자격(면허)증 소지자

- 아래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정한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12에 따라 직류별로 가산 자격(면허)증 구분 적용
 ※ 직무분야관련 자격증 중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보건직류 직무분야관련 자격(면허)증 및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 기능사 : 식품가공 • 임상심리사 1급 • 임상심리사 2급	• 기사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보건교육사1급 • 산업기사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 기능사 : 보건교육사3급	7급	
		5%	3%
		기술사 기능장 기사 임상심리사 1급·2급	산업기사
		9급	
		5%	3%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임상심리사 1급·2급	기능사

< 방역직류 직무분야관련 자격(면허)증 및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산비율	
	• 기사 :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 산업기사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7급	
		5%	3%
		기사	산업기사
		9급	
		5%	3%
		기사	산업기사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비율 >

대 상 별	가 산 비 율	
	2%	1%
등급	1급 및 2급	3급

※ 4급~6급은 가산특전 없음

다.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는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관련 법령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적용가능한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취업지원 대상별 가산비율 >

대 상 별	가 산 비 율	
	10%	5%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신청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신청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11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 ·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급(중등도 장애)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 등급(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라. 의사상자 채용시험 특전 (“검역행정” 지원자에 한함)

- 의사상자 등의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의사상자 등의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의사상자 등의 가산비율 >

가 산 비 율	
5%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단,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 가점 대상도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함

* 관련 법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필기시험 가산특정 적용 유의사항 >

-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해당 가산을 적용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및 자격(면허)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 의사상자 가점 대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의 대상도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적용

8. 기타 참고사항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기관장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는 근무기관 결원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치·임용됩니다.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해당 학력을 졸업하지 않은 경우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다만, 응시 자격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확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 시 해당 근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응시분야에 따라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 및 검역행정 분야) 응시자격 등 공고내용, 원서접수 등 관련 문의(043-719-7020)
 - (보건의료 분야) 응시자격 등 공고내용 관련 문의(044-202-2166), 원서 접수 등 관련 문의(044-202-2170)

직무기술서(질병관리(보건))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기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주요업무	○ 보건행정분야 지침 마련 및 집행 ○ 보건행정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 법정감염병 및 만성질환 등 질병 감시, 관리 및 예방 업무 ○ 국내·외 질병 관련 연구 및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 인식 및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관계 구축력, 긍정성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기술적 전문지식
-------------	--

필요지식	○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등 보건의료 관련분야 지식 ○ 행정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및 약사법 관련 지식
-------------	---

관련분야 : 질병관리(보건) (보건직류 7급)		
응시자격요건	학력	① 보건행정[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등 포함)로서 모집 전공분야의 보건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등 포함) ③ 보건(의료)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질병관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추천방법	○ 본 시험에 응시하는 학교(과)의 학교(과)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과)장 직인이 날인된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작성하고,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불가함

직무기술서(질병관리(방역))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기관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주요업무	○ 방역행정분야 지침 마련 및 집행 ○ 방역행정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 신종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업무 ○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관리 및 예방 업무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 인식 및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관계 구축력, 긍정성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기술적 전문지식
-------------	--

필요지식	○ 역학, 생물학, 공중보건학 등 보건의료 관련분야 지식 ○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결핵예방법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관련 지식
-------------	--

관련분야 : 질병관리(방역) (방역직류 7급)		
응시자격요건	학력	① 방역행정[방역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등 포함)로서 모집 전공분야의 방역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 수의학[수의학과], 생물학[생물학과,미생물학과]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등 포함) ③ 보건(의료)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질병관리학, 감염학, 미생물학 석사학위 소지자
추천방법		○ 본 시험에 응시하는 학교(과)의 학교(과)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과)장 직인이 날인된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작성하고,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불가함

직무기술서(검역행정(보건, 장애구분))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기관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주요업무	○ 운송수단 검역 및 위생검사 ○ 검역감염병 관리 및 예방·홍보 ○ 검역정보 분석 및 평가 ○ 기타 검역행정 업무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 이해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기술적 전문지식
-------------	--

필요지식	○ 공중보건학, 보건행정학 등 보건의료 관련분야 지식 ○ 행정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및 약사법 관련 지식
-------------	---

관련분야 : 검역행정(보건) (보건직류 9급)	
응시자격요건	학력
	① 보건행정[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모집전공분야의 보건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 한약학[한약학과,한약자원학과]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③ 보건(의료)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질병관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추천방법	○ 본 시험에 응시하는 학교(과)의 학교(과)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과)장 직인이 날인된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작성하고,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불가함

직무기술서[검역행정(방역)]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기관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주요업무	○ 운송수단 검역 및 위생검사 ○ 검역감염병 관리 및 예방·홍보 ○ 검역구역 방역 및 위기대응 훈련 ○ 기타 검역행정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 이해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기술적 전문지식	
필요지식	○ 공중보건학, 생물학 등 보건의료 관련분야 지식 ○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결핵예방법 관련 지식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 검역행정(방역) (방역직류 9급)	
	학력	① 방역행정[방역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를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모집전공분야의 방역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 수의학[수의학과], 생물학[생물학과,미생물학과]을 전공한 보건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③ 보건(의료)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질병관리학, 감염학, 미생물학 석사학위 소지자
추천방법		○ 본 시험에 응시하는 학교(과)의 학교(과)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과)장 직인이 날인된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작성하고,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불가함

직무기술서[보건의료(보건)]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 보건의료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 보건의료분야 법령·지침 등 제·개정 ○ 보건의료분야 사업 집행 및 성과 평가 ○ 보건의료분야 통계·조사·연구 관리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운영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 인식 및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능력, 관계 구축력, 긍정성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기술적 전문지식
-------------	--

필요지식	○ 보건의료, 건강보험, 건강증진, 보건산업 등 보건의료분야 제도에 대한 지식 ○ 행정법,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한의약육성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관련 지식
-------------	--

관련분야 : 보건의료(보건) (보건직류 7급)	
응시자격요건	학력
	① 보건행정[보건행정분야로 인정되는 학과]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등 포함)로서 모집 전공분야의 보건행정분야에 열거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② 임상병리[임상병리(학)과], 간호[간호(학)과], 약학[약학과,제약학과], 한약학[한약학과,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자(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 등 포함) ③ 보건(의료)학, 보건(의료)행정학, 보건(의료)경제학, 보건(의료)정책학, 보건(의료)통계학, 역학, 지역보건학, 의료보장학, 노인보건학, 질병관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추천방법	○ 본 시험에 응시하는 학교(과)의 학교(과)장은 응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교(과)장 직인이 날인된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를 작성하고, 해당자 응시원서 제반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추천명부가 동봉되지 않은 접수는 불가함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서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호				한자		
응시직급	☐ 7급 ☐ 9급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응시분야	☐ 보건의료(보건) ☐ 질병관리(보건) ☐ 질병관리(방역) ☐ 검역행정(보건) ☐ 검역행정(방역) ☐ 검역행정(장애구분)					
모집전공 해당분야	☐ 석사학위() ☐ 보건행정 ☐ 임상병리 ☐ 약학 ☐ 간호학 ☐ 한약학 ☐ 방역행정 ☐ 수의학 ☐ 생물학					
학 위	학위취득일	학교명	학과명	학위종류		
주 소 (우) (휴대전화 : e-mail :						
시험가산특천	자격(면허)증				상기 자를 질병관리청 보건직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학교(과)장 [직인] ※ 반드시 직인으로 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급 ☐ 2급 ☐ 3급				
	취업지원대상자	☐ 10% ☐ 5%				
	의사상자 등	☐ 5% ☐ 3%				

※응시번호	응 시 표				
생년월일	성 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직급		한자			
응시직류	2021년 5월 일				
응시분야	질병관리청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하고 오른쪽의 **서명란“(서명)”에 반드시 서명**
3. 복수국적해당여부, 응시직급, 응시분야 : 해당하는 “□”란에 체크 표시(중복체크불가)
4. 모집전공해당분야 : 해당 모집전공분야의 “□”란에 체크 표시(중복체크불가)하고, 석사학위로 응시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전공명도 기재
5. 학위 : **전문학사 이상**(고등학교 졸업 자격 응시자는 고등학교만 기재)의 **모든 학력(시험위원 제척 용도)** 기재

0000.00.00.	○○대학교(○○대학원)	○○○○학과	전문학사
-------------	--------------	--------	------
7. 주소 :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곳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기재
8. 시험가산특전
 - 자격(면허)증 : 공고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보건전문분야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그 자격증 명칭을 기재(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기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 소지자는 해당 급수의 “□”란에 체크 표시(중복체크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는 해당 가산비율의 “□”란에 체크 표시(중복체크불가)
 -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용시험 가산특전 대상자는 해당 가산비율의 “□”란에 체크 표시(중복체크불가)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중복체크불가)
9. 반드시 **학교장 직인(직함도장) 날인 (단과대학장 또는 학과장 직인 날인도 가능)**
 ※ 직인이 아닌 **개인(성함)도장 등 직함을 알 수 없는 경우, 스캔·복사된 직인은 접수 불가**
10. 응시표 : 생년월일, 성명, 응시직급, 응시직류 및 응시분야 기재
11. 응시표 회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동봉하여 송부
 ※ 우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우표 부착시 일반우편으로 응시표 회신(수취 불가능시 응시자 본인 책임)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전자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의 경우 응시원서 바로 뒷장으로 별도 첨부

12.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구매(인터넷 또는 우체국)하여 원서제출 시 응시원서 뒷장으로 첨부하거나, 우표형식으로 우체국에서 구매시 상기 칸에 붙임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없는 경우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장소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부착되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책상 위 오른쪽에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2021년도 제2차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

응시분야	응시직급	응시직류	모집전공분야	추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전공학과

붙임(보건행정·방역행정 모집전공분야만 해당) : 전공학과 개설과목 목록 1부

2021. . .

학교

학교(과)장

[직인]

< 추천명부 작성요령 >

○ 응시분야, 응시계급 및 응시직류

- 아래 분야 중 졸업자가 응시하는 분야 1개의 응시분야, 응시계급 및 응시직류를 기재

* 분야 1에 응시하는 경우 “질병관리(보건)”, “7급”, “보건” 순으로 기재

구분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분야 5	분야 6
분야	질병관리 (보건)	질병관리 (방역)	검역행정 (보건)	검역행정 (방역)	검역행정 (장애구분)	보건의료 (보건)
직급	7급	7급	9급	9급	9급	7급
직류	보건	방역	보건	방역	보건	보건

○ 모집전공분야

- 응시직류별로 구분된 아래 모집전공분야 중, 충족하는 1개를 선택하여 기재

* 모집전공분야별 해당학과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본문 참고

보건직류 모집전공분야			방역직류 모집전공분야			
석사학위	보건행정	임상병리	석사학위	방역행정	임상병리	약학
약학	간호학	한약학	간호학	수의학	생물학	

※ 모집전공분야 중 보건행정 및 방역행정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 개설과목 목록 (응시자 입학 연도 기준 전공교과목)을 추천명부 붙임으로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제한은 없으며, 보건행정·방역행정 모집분야 관련 과목 중 5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운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응시자가 재학했던 기간 중 응시조건을 충족하는 연도의 개설과목을 제출(예: 응시자 입학/졸업 연도 기준 전공교과목)

* 응시자 또한 위와 관련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추천 가능

○ 성명, 생년월일, 전공학과

- 응시자의 성명, 생년월일(0000.00.00) 및 전공학과명 기재

○ 하단에 반드시 학교장 직인(직함도장) 날인 (단과대학장 또는 학과장 직인 날인도 가능)

* 직함을 알 수 없는 개인(성함)도장, 스캔·복사된 직인 등은 불가능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 · 경력 · 자격 · 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 · 논문 · 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 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u>관할 출입국·외국 인청(사무소)</u>	<u>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u>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u>
<u>개인정보(자격 증·경력·학 위) 확인기관</u>	<u>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u>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u>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u>
<u>인사혁신처</u>	<u>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u>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제일, 처분청	<u>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고등이용 증적 보관)</u>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질병관리청장 귀하